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20년 2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 3 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2.3 (월)	담당부서	투자정책과
담당과장	김정화 과장(044-203-4070)	담 당 자	원영호 사무관(044-203-4073)

"국내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"

◆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 기대

◆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오늘 공포, 8월부터 적용 예정

1.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공포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「**외국인투자촉진법**(이하 '외촉법')」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, '20.2.4.(화) **공포**하였다고 밝힘

* 개정안 발의('18.11) → 국회 의결(20.1.9) → 국무회의 의결(1.28) → **공포**(2.4) → **시행**(8월 예정)

□ 이번에 **개정**된 「**외국인투자촉진법**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

< 개정 「외촉법」 주요 골자 >

①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(제2조)

②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·제품* 사업 추가 (제14조의2)

* 산업발전법 상의 첨단기술·업종 33개 분야 2,990개 기술 추가

③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국방부·국정원·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(제27조)

* 현재 산업부장관(위원장), 기재·교육·과기정통·외교·행안·문체·농림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(13명)에 국방부·국정원·방사청 추가

2.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상세내용

❶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

○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**미처분 이익잉여금* 재투자시**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, **국내 재투자시에 어려움**을 겪어옴

*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

* OECD와 IMF 등 국제기구, 미국·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배당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, 장기차관 등과 함께 FDI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음

○ 이로 인해 외투기업은 **추가 투자시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**, 지분 변동에 따른 **대주주 이해조정, 배당소득세** 등 **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**

- 투자결정과 **투자절차가 간단**한 **사내유보 미처분 이익잉여금** 국내 **재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로 인정**해 줄 것을 **건의해 옴**

○ 이에 금번 법 개정으로 **외투인투자 인정범위**를 ①**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** 하고 ②**국내 투자활성화**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**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됨**

< 참고 > 외촉법 개정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범위

개정前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	개정後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
① 외국인의 국내법인 또는 기업 주식 취득 (투자금액 1억원이상+외투비율 10% 이상에 한해 인정) ② 해외 모기업이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	※ 기존 범위(①,②) 이외에 ③을 추가 ③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·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

○ 이에 따라,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**투자 결정절차 간소화** 및 **인센티브 수혜 기대**에 따라 자본의 **해외유출을 최소화**하고 **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

* **(미처분 이익잉여금 투자 事例 例示)** 국내 외투기업 A社는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자본금을 한국으로 직접 도입, 디스플레이 부품에 재투자하려 하였으나 절차 및 이해조정 문제 등으로 선뜻 투자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음. 하지만 금번 **법 개정으로** '20년內 생산 목표로 社內 **미처분 이익잉여금 약 100억원**을 투자키로 결정·추진 중

❷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·제품 사업 추가

○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(Cash Grant)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되었으나,

-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·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

 *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·업종은 현재 33개분야 2,990개 기술이 포함됨

○ 첨단기술·제품 수반사업에도 **현금지원이 확대됨**으로써 **4차산업혁명**을 주도할 **첨단기술 분야의** 외국인 **투자유치 동력 강화**

【 법 개정으로 현금지원 가능한 대상 例 】

- **(자율 주행차)** 주행상황 차량 탑재용 비전센서, 레이더 센서, 차량간 통신네트워크, 사고 회피를 위한 센서퓨전 기술, 통합 제어 시스템 등
- **(스마트형 기계)** 지능형 자율 생산기계, 무인화 스마트 기계, 자율작업 농기계, 자연순환형 기계 등 스마트공장·스마트팜 관련 기계
- **(바이오 헬스)** 유전자 재조합기술,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, 바이오시밀러 제조 개량기술,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, 신체내 생분해 소재 개발 및 제조기술 등

❸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·국정원·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

* (현행 당연직 위원) 산업부장관(위원장), 기재・교육・과기정통・외교・행안・문체・농림・환경・고용・국토・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(현행 13명에서 3명 추가)

○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, 국가 **안보 危害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** 기능 강화 및 **기술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**

 * 산업기술보호법의 「산업기술보호위원회」에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투M&A시 사전 심의·검토를 위해 국방부, 국정원 등 안보관련 부처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

3. 평가와 향후계획

□ 산업부는 "**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** 등 외투기업에 **우호적인 투자환경이** 조성된 만큼, **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**"

□ 산업부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**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**할 계획임

○ 아울러 국내 외투기업들이 금번 법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*을 활용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,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'개정 외촉법 설명회'와 '투자상담회'를 적극 전개할 계획임

 *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투 인센티브 부여 가능
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부여 가능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정화 과장(☎ 044-203-4070), 원영호 사무관(☎ 044-203-4073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내용**

외투기업 재투자 등

①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 인정 (§2)

○ 그간 외투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**외국인 투자를 불인정**하여 외투기업 사내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함에 따라, 외투기업 **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 촉진**을 위해서 **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**도 **외국인투자로 인정**

② 외국인 투자 정의 명확화 (§2)

○ 외국인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**외국인투자 정의 논란 해소**

현금지원 확대 등

①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·제품(산업발전법 제5조) **사업 추가 및 현금지원제도 권리·의무의 중요 내용 상향 입법 (§14조의 2)**

○ 신기술·양질의 고용창출 투자유인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상 사업에 **첨단기술·제품 수반사업을 추가**하여 **현금지원 확대**

○ 현금지원 요건(외투비율 30%), 현금지원 취소·환수 사유 **등 권리·의무의 중요 내용**을 요령(공고)에서 **법령으로 상향**

안보 관련

① 안보 관련 사전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·국정원·방사청 등 안보 관련 부처를 추가(§27)

② 방산업체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에 신주 취득의 경우도 추가 (§6)

○ 그간 국가안보 관리 강화를 위해 방산업체가 발행하는 기존주 취득만 허가 대상이었으나 **신주 취득시**에도 **사전허가 대상**에 포함